

2,508억 원 중 지하철공사 1,100억 원, 도시철도공사 800억 원 등 총 1,900억 원은 고이율 부채를 상환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코자 하는 것이며, 나머지 608억 원은 지하철 공사 296억 원, 도시철도공사 312억 원을 추가 배분하여 고이율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 토록 지원코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사안별 의견

첫째, 부채상환목적 예비비 편성에 대한 의견
 ○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동 부채상환목적 예비비는 본래의 예비비 목적이 다른 편법적인 예산편성이 라고 사료됨.

따라서,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체를 위한 부채상환목적 예산이라면 예비비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감체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둘째, 지원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

○ 지하철 양 공사의 고이율 부채를 우선 상환하여 시 전체의 부채 규모를 줄이고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은 궁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이나 양공사의 장기 악성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도래하는 단기부채만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단기차입을 유도하는 격이 되는 것으로 본래의 부채상환예비비 편성목적에 맞지 않다 할 것이며 장기 고이율 부채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대로 매년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출자전환한다면 양 공사에서는 출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단기고리의 악성 부채만을 차입하게 될 것임. 또한 시 전체의 부채규모는 줄일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에는 “반”한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어 개선코자 노력은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양 공사의 부채규모, 상환계획, 경영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장

기적인 부채상환 및 출자규모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책임경영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2002년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적으로는 감체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 11명, 재석 11명, 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

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	902
번호	

2001년 6월 일
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11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

○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(2001년 6월 25일)

-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,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·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

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,
○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
차고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
함.

3.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: 취득3건 추가
(토지 2건, 건물 1건) - 목록별첨
- 토지 : 3필지 8,357.8m²(2,532.66평)
- 건물 : 557.0m²(168.78평)
□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요약

구 分			전 수	면적(m ²)	금 액(천 원)	세부사항
당 초	취 득	매 입	계	17,766 (2,172.82)	9,215,802	건물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임
			토 지	17,766	8,965,864	
			건 물	2,172.82	249,938	
변 경	취 득	매 입	계	26,123.8 (2,729.82)	22,040,508	
			토 지	26,123.8	21,696,299	
			건 물	2,729.82	344,209	
추 가	취 득	매 입	계	8,357.8 (557.0)	12,824,706	
			토 지	8,357.8	12,730,435	
			건 물	(557.0)	94,271	

□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특별회계
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 (천 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	비 고
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				
1	대지	광명시 소하동 1054-5 외6필지	3,044	757,476	2001 년도	공영 차고 지 보조 차 고지	범일운수 정태영 한옥천	
			(198.1)	-				
2	대지	송파구 장지동 92-4 외8필지	8,746	2,766,516			태화상운	
			-	-				
3	대지	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62-18 외3필지	2,687	1,989,709			홍기운수	
			(973.69)	93.318				
4	대지	금천구 가산동 29-6 외 2필지	3,289	3,452,163			화곡교통 (주)	추가
			(1,001.03)	156,620				
5	대지	강서구 화곡동 890	3,209.8	8,955,342			한국토지 공사	추가
			(557.0)	94,271				
6	대지	구리시 토풍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38-1B/L 외 1	5,148	3,775,093				
			-	-				

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종식)</p> <p>□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.6.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1.6.12 우리 위원회에 회부 ○ 동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,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 ○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8,357.8m²(2,532.66평)과 건물 557.0m²(168.78평) 등 총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·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,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임대코자 하는 것임. <p>□주요 사안별 의견</p> <p>첫째, 동 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○ 이는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의 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또 다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 ○ 또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소요예산은 128억 2천 4백만원이 예상되나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추경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<p>둘째,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 등 버스이용 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서비스 또한 버스승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버스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. ○ 따라서 경영 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,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과의 연계노선 등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개편의 기반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편리한,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 <p>끝으로 형평성에 대한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계획안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 ○ 다만 동 계획안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업체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돌아가 불평불만 등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 <p>5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략 <p>6. 토론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략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 11명, 재석 11명, 전원일치)</p> <p>8. 소수의견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.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</p> <p>2001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,508억원을 '00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.0%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</p>
--